

#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9년 1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1월 29일

3. 제안 이유

-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및 「낙농진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
- 축산물에 대한 검사·시험 등의 의뢰와 수수료 징수 등 축산위생연구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 골자

-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  
(안 제1조)
- 축산물에 대한 검사·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검사·시험

의뢰서와 검체소요량을 제출하여야 하며, 축산위생연구소장은 검사·시험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(안 제3조, 제4조)

- 검사·시험 등의 수수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「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기준」을 적용하며,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조정하고 원유공영검사 수수료의 징수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토록 함(안 제5조, 부칙 제2조2항)
- 충청북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수행상 의뢰한 경우와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함(안 제6조)
- 검사결과의 광고·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교부한 검사·시험성적서를 반환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, 10조)

## 5. 검토 의견

-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낙농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 검사·시험 등의 수수료 징수와 축산위생연구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인 바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삭제하고 당 조례에 규정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, 원유검사 항목을 추가하였으며

○ 실험용 검체소요량과 축산물검사 및 수출육류잔류물질검사 등을 제정하는 바 용어의 명칭과 검사·시험 등을 위한 현지출장 여비징수에 있어서는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으로서 시대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사안으로서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